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73
----------	-------

발의연월일 : 2024. 5. 16.

발 의 자 : 이자스민·배진교·양경규
장혜영·허숙정·강은미
박용진·도종환·심상정
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글로벌 경제 협력, 국가간 사회·문화 교류 증대, 우리나라의 경제·문화 선진국 대열 진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성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됨.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구현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등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방송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 및 관심 제고와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6조제10항 신설).
- 나. 방송 심의규정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3조제2항제8호의2 신설).
- 다.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안 제44조제6항 신설).
- 라. 방송사업자가 외국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로 된 대사를 외국어 자막 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13항 신설).
-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 채널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범위에 포함함(안 제70조제3항 및 제6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방송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 및 관심 제고와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법률 제2014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⑬ 방송사업자는 외국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로 된 대사를 외국어 자막 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⑭ 제13항에 따른 외국어 자막 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3항 중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을 “채널,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 및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條(放送의 公正성과 公益性) ① ~ ⑨ (생략) <u><신설></u>	第6條(放送의 公正성과 公益性) ① ~ ⑨ (현행과 같음) <u>⑩ 방송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 및 관심 제고와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u>
第33條(審議規程) ① (생략) ② 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u><신설></u> 9. ~ 17. (생략) ③ ~ ⑥ (생략)	第33條(審議規程)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u> 9. ~ 17.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44條(公社의 公的 責任) ① ~ ⑤ (생략) <u><신설></u>	第44條(公社의 公的 責任)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u>
법률 제20147호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 제20147호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 ~ ⑫ (생략)

<신설>

<신설>

第70條(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 ·

② (생략)

③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법률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방송사업자는 외국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로 된 대사를 외국어 자막 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⑭ 제13항에 따른 외국어 자막 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70條(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u> ④ · ⑤ (생략) ⑥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은 다음 각 호의 방송을 중계송신하는 채널로 한정한다. 다만, 하나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 4. (생략) <u><신설></u> 5. · 6. (생략) ⑦ ~ ⑨ (생략)	<u>채널,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 및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u>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u> 5. · 6.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	--